

서울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19나204738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19나204738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1568 판결

전 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민 담당변호사 유승관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희정

변론 종결 2020. 11. 18

판결선 고 2021. 1. 13

제1심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156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합하여 보더라도 C이 무자력이라거나,이 이 사건 아파트를 아들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의 소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 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설령 원고에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설령 원고의 소가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원고 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할 수도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장석 조판사 박성준판사 한기수